2019년 10월 30일



히제아저과리 그저

491000 110			
ələlul ÷	W/ 1 0	TITIOI	001011 0081 1501
관리번호	W-1.3	제정일	2013년 02월 15일
승인책임자	병원장	최근개정일	2016년 10월 31일
검토책임자	규정관리위원장	시행일	2016년 12월 01일
주무부서	과리과 총무과	검투주기	3년

검토예정일

1. 목적

관련근거

환자와 직원을 화재로부터 보호하며 인화성 위험물질 등을 관리하여 화재 예방, 조기탐지와 진압, 안전한 대피로를 확보하고, 안전한 의료서비스 환경을 제공하기 위함이다.

Ⅱ. 정의

- 1. 소방계획서 : 화재로부터 병원을 이용하는 인명과 병원의 재산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예방 점검, 소방시설에 대한 유지관리, 개선, 화기취급의 절차, 소방훈련 등 방화관련 전반에 대한 업무의 계획을 말한다.
- 2. 소방안전관리자 (건물주 선임자)

의료기관인증기준1.3

- : 소방관련 자격을 가진 자로 방화 대상물의 소방계획서의 작성, 자위소방대 조직, 소방 시설물의 점검, 소방훈련 등 소방안전관리 업무 전반에 대해 책임과 권한을 가진 자를 말한다.
- 3. 소방안전보조자 (병원 선임자) :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를 보조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 4. 작동기능점검 : 소방시설 (소화용수, 소화설비, 피난설비, 경보설비 등) 인위적으로 연동 조작하여 정상 작동 여부를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 5. 종합정밀점검 : 소방시설 등의 작동기능점검을 포함하여 설비별 주요 구성부품의 구조 기준이 화재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Ⅲ. 정책

- 1. 화재 안전관리 계획에 따라 화재 예방점검을 수행한다.
- 2. 화재 발생 시 대응체계를 수립하고 직원 소방안전 교육 및 훈련을 연1회 이상 실시한다.
- 3. 금연에 대한 규정이 있고 이를 준수한다.

Ⅳ. 절차

- 1. 화재 안전관리 계획
 - 1) 매년 12월 말까지 다음 연도 화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병원장에게 보고하고 결재를 받는다.
 - 2) 예산은 매년 11월 말까지 총무과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경영위원회 검토를 받아 병원장의 승인을 받으며 이를 화재 안전관리계획에 반영한다.
- 2. 화재 예방점검
 - 1) 소방시설 점검
 - (1)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 25조 및 규칙 제19조에 의거 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과 작동기능점검을 실시한다.



- ① 종합정밀점검은 외부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연1회 실시하고 위탁업체는 종합정밀점검 결과를 관할소방서(30일 이내)와 병원에 제출하고 병원은 그 결과를 2년간 보관한다.
- ② 작동기능점검은 외부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연 1회 실시하고 위탁업체는 작동기능점검 결과를 관할소방서(30일 이내)와 병원에 제출하고 병원은 그 결과를 2년간 보관한다.
- ③ 소방점검결과 지적받은 소방 시설의 고장 및 기준 미달의 시설에 대하여 즉시 보완조치하고 소방안전보조자는 병원장에게 보고하고 위탁전문업체는 관할소방서에 조치 결과를 보고한다.
- (2) 자체점검은 일간. 월간으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그 내용을 기록한다.
- (3) 소방대상물 점검 내용
 - ① 소화설비 : 소화기, 옥내·외 소화전, 스프링클러 등
 - ② 경보설비 : 자동화재 탐지설비, 비상방송설비, 가스누설경보기
 - ③ 피난설비 : 피난기구, 구조대, 유도등 및 유도표지 등
 - ④ 소화용수설비 : 상수도 소화용수설비
 - ⑤ 그 밖의 소화활동설비 : 제연 설비, 연결 송수관 설비 등
- 2) 대피경로에 적재물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의 설치가 없는지 확인한다.
- 3) 비상구, 유도등, 발신기의 점등 상태를 확인한다.
- 4) 화재예방을 위한 점검
 - (1) 소방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은 외부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월 1회 실시하고 그 점검기록을 소방안전관리자가 확인하며 소방안전보조자가 2년간 보관한다.
 - (2) 점검결과 고장 또는 성능 미달의 소방시설에 대하여는 소방안전보조자가 병원장에게 보고 후 정비, 보완하고 소방시설 정비보완기록부에 기록·유지한다.
 - (3) 각 층별 화기 책임자를 지정하여 책임구역 내의 화기를 단속한다.
 - (4) 소화설비(소화기, 소화전), 경사하강식구조대는 월 1회 점검한다.
 - (5) 소화기, 소화전 외관상태가 양호한지, 소화기의 정위치를 확인한다.
 - (6) 방화문/방화셔터 관리
 - ① 방화문은 항상 닫혀 있어야 한다.
 - ② 방화셔터 앞이나 바닥에 표시를 해서 물건이 적재되지 않도록 한다.
 - ③ 방화셔터 연기감지기가 화재를 감지하여 작동하며 기능점검 및 정밀점검 시 작동시험을 하여 그 결과를 기록, 보관해야 한다.
 - (7) 평소 사용하지 않는 비상구는 비상시 내부에서 개방이 가능한지 확인한다.
 - (8) 층별 화기 책임자 및 직원은 위의 사항에서 문제점을 발견하게 되면 즉시 시정조치를 취하고 문제점 및 미 조치 사항을 소방안전보조자(시설담당, 원내 1296)나 관리과에 연락하여 조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 (9) 방화 순찰은 매일 1회 이상 실시하며 순찰일지로 확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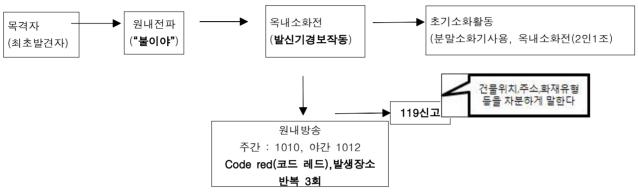
주간(소방안전보조자): 09:00 ~ 18:00, 야간(당직자): 18:00 ~ 09:00

- (10) 방화 순찰 중 특이사항을 발견하면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여 조치토록 한다.
- (11) 화재의 위험성이 있는 구역게시물 및 표지를 부착한다.
 - ① 간이조리실 내 전자레인지 안전사용 지침을 부착한다.
 - ② 옥외 휴게실 및 계단, 화장실 등 금연 표지를 부착한다.
- 5) 소방시설의 공사, 정비 등을 시행할 때에는 소방설비공사 허가업체에 위탁·의뢰하여 시행한다.



3. 소방훈련 실시

- 1) 병원 자체훈련 또는 소방서와 합동으로 실시하며, 연 1회 실시한다.
- 2) 연간 소방훈련계획에 의거하여 소화, 화재통보, 피난 등의 요령에 관한 사항을 훈련한다..
- 3) 소방훈련 후에는 소방훈련 평가서를 작성하여 보고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보 완하여 다음 훈련계획에 반영한다.
- 4) 소방훈련 일지를 작성하고 2년간 보관한다.
- 4. 직원 소방안전교육(화재 발생시 대응체계)



화재 발생시 대응체계 < 부서내 게시판을 통해 정보를 공유한다.>

1) 신고체계

가) 최초 발견자는 큰소리로 "불이야"를 외쳐 주위에 알린 후 소화전의 발신기를 누르고 원내 방송(주간 1010, 야간 1012)에 연락하고, 연락을 받은 지휘 통제실 직원은 소방서(119)에 신속하게 신고 후 경보방송으로 전 부서에 알린다.

<화재발생 경보방송 : Code - Red(코드 레드) 발생장소 반복 3회>

- 나) 직원 1인이 근무 시 화재가 발생할 경우 큰소리로 "불이야"를 외쳐 주위에 알리고 소화전의 발신기를 누른 뒤 신고체계에 따라 경보 방송 및 신고를 요청한다. 119 직원 및 자위소방대가 도착하기 전 까지 소화기 및 소화전을 이용하여 초기 소화활동을 시행한다.
- 다) 직원이 2인 이상인 경우 최초 발견자는 큰소리로 "불이야"를 외쳐 주위에 알린 후 초기 소화활동을 시행하고, 주위소리를 들은 직원은 소화전의 발신기를 누른 뒤 신고체계에 따라 경보방송 및 119 신고를 요청한다.
- 라) 화재 발생 층 근무자들은 인근에 있는 소화기와 소화전을 사용하여 초기 소화 활동을 시 도하고 자위소방대의 역할에 따라 행동한다.
- 마) 직원들은 화재 시 층별 자위소방대 편성에 따라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되, 층별 화기책임 자 다음 서열 직급자 순으로 팀장의 역할을 승계하여 수행한다.
- 바) 상황 종료 시 "코드 레드 종료" 3회 반복 방송하여 직원들에게 알린다.
- 2) 피난층 위치 : 1층, 별관 1층 (외부로 직접 통하는 출구가 있는 층)
- 3) 안전구획 위치 : 복도, 비상계단, 옥상

구분	경급화재	중급화재	대형화재 대형재난	
ᆔᇈᄎ	계단 부근이나	1층 로비		
피난층	2개 층 이상 상하	옥상	건물 밖 대피	
안전구획	복도	비상계단		

- 1차 안전구획(복도): 수평방향의 피난경로로 중앙계단과 비상계단 방향에 위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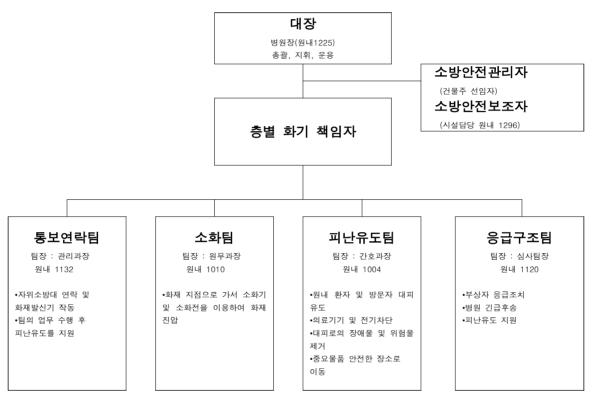


- 2차 안전구획(계단) : 수직방향의 피난경로로 중앙계단과 비상계단 방향에 위치한다.
- 4) 피난시설의 위치
 - (1) 경사하강식구조대 위치 : 3층 영상의학과 옆 비상계단, 4층 재활센터 안쪽, 5층 수술실 내회의실, 6층 604호 앞, 7층 703호 앞, 8층 804호 앞
 - (2) 경사하강식구조대 사용법
 - ① 커버(뚜껑)를 들어낸다.
 - ② 구조대 활강포를 천천히 내린다.
 - ③ 하부 지지 장치를 고정한다.
 - ④ 입구틀을 세우고 발부터 들어가 양다리를 벌리고 하강한다.
 - (3) 유도등 : 피난구 유도등, 계단 통로 유도등, 복도 통로 유도등
 - (4) 인명구조장구 : 방열복, 공기호흡기(2층 직원 탈의실, 5층 회의실), 들것
- 5) 피난계획 및 경로
 - (1) 화재 발생 시 대피안내도를 따라 화재발생 지점으로부터 반대방향 비상구 계단을 이용하여 1층 건물 밖으로 대피하되. 불가피한 경우에 옥상으로 대피한다.
 - (2) 피난유도 순서
 - 1순위 : 화재 발생 층의 발화 층 인원대피 유도
 - 2순위 : 화재 발생 층의 직상 층 인원대피 유도
 - 3순위 : 화재 발생 층의 상층부 인원대피 유도
 - (3) 화재발생시 그 경중은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 경급화재 : 화염이 적고 복도 일부에 연기가 확대되는 상황
 - 중급화재 : 침대 2개 이상 소실 시
 - 대형화재 : 1개 층 이상의 연소 시
 - 대형재난 : 건물 밖으로 모두 나가야 하는 화재
 - (4) 피난경로의 설정 및 피난 방법 [첨부 1]
 - (5) 화재 발생 시 대피하는 과정에서 고립, 단전, 화재 발생층에서의 개폐 등의 위험이 있으므로 엘리베이터는 절대 사용하지 않으며, 계단을 이용하여 대피한다.
 - (6) 피난 대피로 안내판을 부착한다.
- 6) 대피 요령
 - (1) 비상구 및 계단을 통하여 대피할 때에는 반드시 방화문을 닫고 대피하여 불길과 연기의 확산을 지연한다.
 - (2) 방화문에는 임의로 문 고정장치(Door stopper)를 설치하지 않도록 한다.
 - (3) 방화문 주변에는 문의 폐쇄에 방해가 될 수 있는 물품을 적재하지 않도록 한다.
 - (4) 여닫이 방화문은 피난방향으로 열리도록 설치한다.
 - (5) 통로의 피난 유도등에 따라 낮은 자세로 침착하고 질서 있게 신속히 대피한다.
 - (6) 연기 속에 통과하여 대피할 때에는 수건 등을 물에 적셔서 입과 코를 막고 낮은 자세로 신속히 대피한다.
 - (7) 출입문 손잡이가 뜨겁거나 문틈에서 연기가 새어 들어오면 이미 밖에 불이 번져 있거나 유독가스가 있다는 증거이므로 절대로 문을 열어서는 안 된다.
- 7) 화재 시 직원의 업무분담

소방안전관리자는 비상연락망을 구축하고, 층별 자위소방대를 통보연락팀, 소화팀, 피난유도팀, 응급구조팀으로 편성하여 화재 시 지정된 역할을 수행한다.



- (1) 층별 화기책임자
 - ① 화재 발생 시 팀을 활성화하고, 적재적소에서 역할을 수행하도록 지휘
 - ② 화재 피난상황을 실시간으로 지휘본부에 보고하여 조치를 취한다.
- (2) 자위소방대 편성표 (층별 자위소방대는 소방계획서 참조)



(3) 야간 및 휴일 자위소방대 편성표는 다음과 같다.

구분	근무자-역할분담	비고
	~ [기다지기 · 주기 시원하다	- 화재 발생 시 신고는 119 신고를 우선적으로
	야간당직자 : 초기소화활동	한 후 비상연락망을 가동하여 자위소방대를
야간	6병동 근무자 : 편성표 대로	
및 휴일	7병동 근무자 : 편성표 대로	
	 당직의사 : 응급구조팀	- 환자 대피는 조명등을 활용하여 1층이나,
	옥상으로 대피시키고 구조를 기다린다.	

【 비상연락망 】 야간 당직자 -> 소방안전관리자 / 소방안전보조자 -> 병원장 (원내 1012) (건물주 선임자) (원내 1296) (원내1225)

- *** 소방안전관리자/소방안전보조자는 자위소방대 활성화 위해 각 팀장에게 연락한다.***
 - (4) 주간, 야간 및 휴일 자위소방대에 편성하지 않은 모든 인원은 피난유도팀으로 한다.
 - (5) 자위소방대 업무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역할	활동내역	비고	
소방안전관리자 소방안전보조자	1. 화재발생시 팀을 활성화하고, 적재적소에서 역할을 수행하도록 지휘 2. 화재 및 피난상황을 실시간으로 지휘본부에 보고하여 조치를 취한다. 긴급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선 조치 후 보고할 수 있다. 3. 평상시 화재예방을 위한 활동을 실시하고 점검한다.	○ 병동은 day, evening, night 근무인 원에 따라 통보연락, 소	
통보연락팀	1. 화재발생시 주간(1010)/야간(1012)로 연락, 원내방송으로 즉각 상황을 전파 2. 소방서와 협력 의료기관등 유관기관에 신고, 통보하여 적시에 필요한 조치가 취해지도록 한다. 3. 소방안전관리자의 지휘에 따라 원내 지휘본부에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고한다. 4. 타 의료기관으로의 환자 이송 또는 환자의 대피상황을 전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간략하게 기록, 보고한다. 5. 지속적인 역할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응급구조반을 지원한다.	화, 피난유도, 응급구조를 수행한다. 각 팀은 소방안전관리자의 지휘에 따라 발생한 화재를 신속하게 진압하고, 환자를 대피시킬 수 있도록 지원한다.	
소화팀 <초기 소화활동>	1. 인근의 소화기와 소화전을 이용하여 화재를 초기 진압한다. 2. 자체 진화가 어려울 경우, 즉시 지원을 요청한다. 3. 소방관이 도착하면 상황을 설명하고 필요한 사항을 지원한다. 4. 초기진압에 성공하더라도 완전 진화를 확신할 수 있을 때까지 점검한다. 5. 화재 초기 진압에 참여할 필요가 없거나 지시를 받을 경우에는 피난	지휘 본부의 명령에 따라 부서원들의 역할과 위치를 상황에 맞게 변경하여 수행하도록 할수 있다. 그 다 팀원은 지휘본부 및 충별 화기 책임자의 지휘에 따라, 화재의 자체진압이 가능할 경우에는 근무 장소에서 비상대기하며 추가적인 화재위험 요소 또는 확산에대비한다. 그급 상황 발생 시 즉시소집에 응해야 하며, 무단으로 자리를 이탈하지않는다. 이 시술/수술 중인 환자는 안전이 확보된 범위내에서 최대한 신속하게인근병원으로 후송한다.	
피난유도팀	유도팀을 지원한다. 1. 신속하게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여 안전한 대피로 확보 및 환자, 방문 객을 안전한 장소로 대피 유도한다. 2. 환자 등이 피난경로를 잃지 않도록 적재적소에 위치한다. 3. 환자 이송이 필요한 병동이나 수술실 등에 최대한 인력을 지원한다. 4. 계단을 이용하여 이송하며, 전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구급차 등 이송 차량에 탑승하는 과정까지 지원한다. 5. 환자 대피, 이송이 완료되면 지휘에 따라 다른 팀을 지원한다. 6. 의료기관의 소명을 다했다고 판단이 되면 지시에 따라 조직운영에 필요한 전산서버, 회계 및 운영 관련 중요 서류, 의료장비 등 외부로 이동시킨다.		
응급구조팀	1.화재 발생 시 환자별 상태를 점검하여 응급조치를 시행한다. 2. 해당 층에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피경로에 따라 지정된 장소로이동하여 응급조치를 시행한다. 3. 이동 중 호흡보조 등의 조치가 필요한 환자는 응급구조팀이 동행한다. 4. 환자의 타 의료기관 전원시 동승 여부를 판단하여 조치한다. 5. 응급조치의 내용에 대한 최소한의 기록을 유지한다.		

8) 환자 유형별 대피 계획 및 환자 후송

- (1) 환자 유형별 대피계획
 - ① 환자 대피가 동시에 이루어지되 경환자우선 대피하고, 독립보행이 어려운 환자나 중환자는 의사 또는 간호사가 보조하여 동행한다.
 - ② 등급별 분류 및 확인 : 환자인식밴드 색깔 구분(초록색, 노란색, 빨간색) 가. 1유형(초록색) : 독립보행이 가능한 환자/직원 및 방문객은 간호사, 조무사, 피난



유도팀원의 안내에 따라 보호자의 도움 및 자력으로 대피한다.

- 나. 2유형(노란색): 약간의 도움으로 보행이 가능한 환자는 간호사, 조무사, 피난 유도 팀원이나 보호자가 부축하여 대피한다.
- 다. 3유형(빨간색): 독립보행이 어려운 환자 및 1, 2 유형 중 낙상고위험환자는 의사, 간호사, 조무사, 피난 유도팀원이 이동기구(들것, 시트, 매트리스 등)를 이용하여 대피시킨다.
- ③ 해당 병동에서는 입원 , 근무 조별 변경 시, 환자 상태 변경 시 등 즉시 해당 환자인식 태그를 부착한다.
- (2) 외래환자 및 병원 이용객의 경우에도 휠체어나 목발을 사용하는 등 이동보조 필요한 경우, 직원 2인 1조로 대피시킨다. 이동기구가 부족하거나 긴급 시에는 환자를 업고 이송한다.
- (3) 수술 중인 환자의 경우에는 집도의 판단 하에 수술 진행정도를 결정할 수 있고 수술에 참 여하는 의료진이 대피시켜 신속하게 인근 의료기관으로 후송한다.
- (4) 전신 마취환자는 화재 발생 상황 및 수술진행 상황에 따라 신속하게 자가 호흡을 할 수 있도록 한 뒤 들것을 이용하여 대피 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자가 호흡이 돌아오는 데 시간이 소요되는 환자는 의사에 의해 Ambu-Bagging 상태로 동원된 인력과 함께 이동기구(이동용 들것, 시트, 매트리스 등)를 이용하여 유도요원의 지시에 따라 대피한다.
- (5) 국소 마취환자 : 동원된 인력에 의해 이동기구(이동용 들것, 시트, 매트리스 등)를 이용하여 안내방송 및 유도요원의 지시에 따라 대피한다.
- (6) ABR이 필요한 환자 : 복도까지는 Bed채로, 계단을 통한 대피가 필요시 지지할 수 있는 매트리스로 ABR 상태 유지시키면서 유도요원의 지시에 따라 대피 한다.
- (7) 화재 또는 대피 중 발생한 응급 환자에 대한 의료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 119 및 인근 의료기관, 인근 상급종합의료기관 등과 신속하게 연계하여 지원 받거나 후송한다.

< 인근 후송 계획 의료기관 >

후송환자 구분	후송의료기관	대표전화
일반환자/화상환자	한림대학교 성심병원	1577–1801
일반환자	안양샘 병원	031-467-9114

- 9) 산소 등 의료가스의 안전한 보관 및 취급방법
 - (1) 이동용 가스 용기는 지정된 장소에 넘어지지 않도록 고정하여 보관하고, 사용 후에는 밸브를 잠근다.
 - (2) 용기 밸브를 열 때는 서서히 시계 방향(오른쪽)으로 개방하고 사용하지 않을 경우 닫아 둔다.
 - (3) 산소 용기의 색깔은 백색이다.
- 10) 의료가스 차단 시 대처방안
 - (1) 화재 시 병동에 설치된 의료가스는 관리과 담당자가 생명이 위협이 되거나 고농도 산소 치료가 요구되는 환자에게 필요한 이동용 가스용기 공급여부를 확인 후 의료가스 밸브 를 잠근다.
 - (2) 해당 부서의 의료가스 차단 담당자는 day(수간호사), evening 및 night(선임간호사)로 한다.
 - (3) 산소요법 환자는 화재 주변을 벗어난 후 이동용 산소를 이용하여 대피한다.



- 11) 화재발생시 전원차단 계획
 - (1) 누전으로 인한 2차 화재 피해를 막기 위해 화재 장소와 전열, 동력의 전원을 모두 차단 한다.
 - (2) 공조 배관을 통한 연기 확산을 막기 위해 공조기 전원을 차단한다.
 - (3) 화재 발생 시 승강기 전원을 차단하여 연기 확산 및 정전으로 인한 승강기 내의 2차 피해를 막는다.
- 12) 소화 장비 사용법
 - (1) 소화기 사용법
 - ① 바람을 등지고 안전핀 링에 손가락을 건다.
 - ② 안전핀 링을 잡아 뺀다.
 - ③ 노즐을 잡아 화점을 향한다.
 - ④ 상하 레버를 강하게 쥔다.
 - ⑤ 노즐을 좌우로 쓸 듯이 분사하여 화재를 진압한다.
 - (2) 옥내소화전 사용법
 - ① 2~3인 1조가 되어 소화전을 열고 관창(물을 뿌리는 부분)과 호스를 꺼낸다.
 - ② 한 사람은 호스의 접힌 부분을 펴주고 관창(노즐)을 가지고 간 사람이 물을 뿌릴 준비가 되었으면 소화전 밸브를 개방한다.
 - ③ 관창을 잡고 불이 난 곳에 물을 뿌린다.
 - (3) 옥내소화전 사용 시 주의사항
 - ① 방수 시 호스가 꺾이지 않도록 한다.
 - ② 방수 시 호스의 반동력이 크므로 노즐을 몸에 견고히 고정한다.
 - ③ 반동력이 큰 소화전은 노즐 조작 시 보조자를 추가하여 고정한다.
 - ④ 소화가 되면 반드시 밸브를 잠근 후 노즐을 놓고 원래대로 정리해 넣는다.
- 5. 금연 규정
 - 1) 금연구역을 지정하고 표지를 부착한다.
 - 2) 병원 내 금연 활동을 수행한다.
 - 3) 금연 구역 내 흡연자에 대한 조치를 취한다.
- 6. 금연 규정 준수
 - 1) 금연구역 지정 및 표지 부착
 - (1) 본원은 건물 내부를 포함한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
 - (2) 병원 내 화장실 내·외부, 각 계단, 병실, 주차장 등에 금연표지 부착
 - 2) 병원 내 금연 활동
 - (1) 입원생활안내문과 게시판을 통해 병원 시설은 금연구역임을 표시하고 안내한다.
 - (2) 주 3회 이상 금연 안내 방송을 실시한다.
 - (3) 금연에 대한 직원 교육 : 소방안전 교육 시 금연 교육을 실시한다.
 - 3) 금연 구역 내 흡연자에 대한 조치
 - (1) 직원 등이 금연구역에서 흡연이 적발 된 경우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구 분	직 원	용역직원	기타 내원객 (계약업자 등)
1회 적발	경 고	경 고	경 고
2회 적발	부서장 통보	부서장 통보	관련 내원 부서통보
3회 적발	병원장 보고 인사위원회 회부, 징계 조치	업체 관리자 문책 요구 협조	본원 거래에 대한 거부

- (2) 내방객 흡연 발견 시 직원은 즉시 이를 저지하고 건물 밖으로 안내한다.
- (3) 입원 환자의 흡연 적발 시 강제 퇴원 조치할 수 있다.
- (4)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하여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는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내용 등을 안내한다.

IV. 참고

- 1.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피난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25조(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등)
- 2.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3(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의 구성, 운영 및 교육 등), 제18조(자체점검등 자체점검의 구분 및 대상)

[별첨]

별첨1. 층별 피난 경로

입안자	규정관리위원장	
승인책임자	병원장	
서명일		



[별첨 1] 층별 피난 경로

층별	시설현황	대 피 방 향 및 우 선 순 위
지하 4층	기계실	 지하 4층은 통제구역으로 화재 시 소화설비가(스프링쿨러) 작동됨. 비상계단을 이용하여 지하 1층을 통해 지상으로 대피한다.
지하 1,2,3층	주차장	● 화재지점과 거리가 멀고, 연기반대 방향 탈출로(비상계단)를 이용하여 지상으로 대피 ● 비상계단을 이용하여 지하 1층을 통해 지상으로 대피한다.
2층	외래,원무과,척추센터 ,관절센터,상담실	 화재지점과 거리가 멀고, 연기반대 방향 탈출로(비상계단)를 이용하여 지상으로 대피하되, 불가피한 경우에 옥상으로 대피 걸을 수 있는 환자부터 우선하여 탈출로를 이용하여 밖으로 대피 걸을 수 없는 환자는 들것, 스트레쳐 카트, 휠체어 사용, 이송기구가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업거나 안아서 밖으로 대피
3층	내과, 임상병리실, 영상의학과	 화재지점과 거리가 멀고, 연기반대 방향 탈출로(비상계단)를 이용하여 지상으로 대피하되, 불가피한 경우에 옥상으로 대피 걸을 수 있는 환자부터 우선하여 탈출로를 이용하여 밖으로 대피 걸을 수 없는 환자는 들것, 스트레쳐 카트, 휠체어 사용, 이송기구가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업거나 안아서 밖으로 대피
4층	운동재활센터, 비수술센터, 약국	 화재지점과 거리가 멀고, 연기반대 방향 탈출로(비상계단)를 이용하야 상으로 대피하되, 불가피한 경우에 옥상으로 대피 걸을 수 있는 환자부터 우선하여 탈출로를 이용하여 밖으로 대피 걸을 수 없는 환자는 들것, 스트레쳐 카트, 휠체어 사용, 이송기구가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업거나 안아서 밖이나 옥상으로 대피
5층	수술실	 화재지점과 거리가 멀고, 연기반대 방향 탈출로(비상계단)를 이용하여 지상으로 대피하되, 불가피한 경우에 옥상으로 대피 수술대기 중으로 마취를 하지 않은 환자 중에 걸을 수 있는 환자를 먼저 대피 걸을 수 있는 환자부터 우선 비상계단 이용하여 밖으로 대피 걸을 수 없는 환자는 들것, 스트레쳐 카트, 휠체어 사용, 이송기구가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업거나 안아서 밖이나 옥상으로 대피
6,7층	6,7병동	 화재지점과 거리가 멀고, 연기반대 방향 탈출로(비상계단)를 이용하여 지상으로 대피하되, 불가피한 경우에 옥상으로 대피 걸을 수 있는 환자부터 우선 비상계단 이용하여 밖으로 대피 걸을 수 없는 환자는 들것, 스트레쳐 카트, 휠체어 사용, 이송기구가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업거나 안아서 밖이나 옥상으로 대피
8층	행정실, 의국, 직원식당	 화재지점과 거리가 멀고, 연기반대 방향 탈출로(비상계단)를 이용하여 지상으로 대피하되, 불가피한 경우에 옥상으로 대피 걸을 수 있는 환자부터 우선 비상계단 이용하여 밖으로 대피 걸을 수 없는 환자는 들것, 스트레쳐 카트, 휠체어 사용, 이송기구가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업거나 안아서 밖이나 옥상으로 대피
별관 2층	피부비뇨기과	● 계단을 통하여 1층이나 옥상으로 대피